

제 호

동물용의약품 제조·품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:

「약사법」 제38조의5제2항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
제14조의7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의 제조·품질관리
기준 교육·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(뒤쪽)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
연월일	내 용